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6 선고 2018가단952 판결 [매매대금청구의 소]

전 문

파산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B

원 고 주식회사 C

변론 종결 2018. 8. 16

판결 선고 2018. 9.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42,8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D은 자신의 부친 A과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2010. 11.경부터 2014. 9.경까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E에서 폐기물처리업체인 F을 운영하였는데, 다만 그 실제 운영은 D이 단독으로 행하였다,

나. F의 영업용 재산을 포함한 영업 일체는 2014. 10.에서 2014. 12. 사이에 피고 앞으로 모두 이전 완료되었다.

다. 피고는 G이 D으로부터 F의 영업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2014. 11. 11. 설립하여 그 누이인 H을 형식상의 대표이사로 두고 운영하던 회사였는데, G이 2014. 12. 말경 사기 혐의로 구속된 이후, 2015. 4. 22.에 이르러 I이 대금 1억 원에 피고의 발행주식과 경영권 일체를 양수하였다.

라. 한편 A은 2016. 6.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하단100922호로 파산신청을 하여 2016. 12. 12.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같다), 을 제1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4. 12. 11. 경 갑 제 3호증의 1계약서에 의하여 D으로부터 매매대금 427,620,000원에 F의 영업 일체를 매수하고, 그 대금 중 142,000,000원은 D의 정책자금대출금을 상환함으로써 변제하였으나, 나머지 대금 285,620,000원은 아직까지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위 매매대금은 F의 영업양도에 대한 대가이므로, D과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A도 위 매매대금에 대하여 절반의 지분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A의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위 미지급대금 285,620,000원의 1/2인 142,81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이 별도의 양도대금 없이 부채만 갚아줄 것을 조건으로 하여 F의 영업을 G에게 양도한 후에, G이 다만 그 영업양도의 법적

형식은 주식회사인 피고를 설립하여 위 회사앞으로 영업재산 등의 명의를 이전해 달라고 하여,그 과정에서 D은 G에게 세무신고를 위해 매매금액을 적당히 기재한 위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사실이 인정되는바,피고와 D 사이에 매매대금 427,620,000원의 유효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피고와 D 사이의 위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경우에도,피고는 F의 영업을 사실상 인수한 결과 D과 A에게 그 취득한 영업에 상응하는 실제거래가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D과G사이에 체결된 영업양도계약의 이행으로 제3자인 피고가 급부를 수령하였다고 하여이를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라 보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부당이득을 반환함에 있어서는 원물반환이 원칙인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김미리